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윤서규의원의외 7인

2. 제안이유
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함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『간사』의 호칭을 『부위원장』으로 변경 (안 제53조·제65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규칙안은 「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등을 정비하는 개정 규칙안임.